

공공기관 발주 건설현장, 하반기부터 재해율 통보

고용노동부는 올 하반기부터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이 발주하는 건설현장의 재해율을 해당 기관에 직접 통보할 방침이라고 2월 14일 밝혔다.

고용부의 이같은 방침은 공공기관 및 공기업들의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조치다. 다시 말해 준정부기관부터 관련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에 경각심을 갖고 만전을 기하라는 경고인 셈이다.

세부계획을 살펴보면 고용부는 이르면 오는 7월부터 공공기관 및 공기업 발주 현장에 대한 재해율을 해당 기관 및 각 기관이 소속된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고용부는 통보 대상 공공기관 및 공기업을 선별하고, 이들 기관이 발주한 현장의 재해율과 재해 관련 통계를 별도로 집계하기 시작했다. 현재 첫 통보일은 7월 1일로 예정되어 있다.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정책과의 이정인 사무관은 “준정부기관들이 발주기관으로써의 책임의식을 갖고 자신들의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에 적극 나서도록 하기 위해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이번 계획이 건설재해 감소는 물론 공공기관의 안전의식 향상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참고로 지난해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재해는 전체 건설재해의 8% 정도를 차지했다.

고용노동부 안전부서 업종별로 세분화

고용노동부가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직제를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고용노동부는 직제 개편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월 7일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본부 노사정책실이 노동정책실로 명칭이 바뀌며 12개과 1팀으로 세분화된다.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해서는 산재예방정책과, 산재보상정책과, 제조산재예방과, 건설산재예방과, 서비스산재예방팀으로 세분화된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다각적인 재해예방 노력을 펼치기 위해 관련 부서를 업종별로 세분화하여 운영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업무분장도 부서에 맞게 조정된다. 산재예방정책과는 산업재해예방 및 보상정책의 수립·총괄, 산업안전보건제도의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장 안전·보건 감독계획의 수립·지도, 산업재해 관련 통계의 분석 및 유지·관리, 산업안전보건투자계획의 수립 및 효과분석 등 산재예방에 대한 정책적인 사항을 담당한다.

그 외 제조산재예방과는 제조업 재해예방 기본계획 및 대책 수립·시행, 공정안전관리제도(PSM) 운영, 안전인증·검사제도 운영, 안전보건개선계획 및 안전보건진단에 관한 사항,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 운영, 작업환경측정제도 운영, 근골격계질환 예방에 관한 사항 등을 관할하며, 건설산재예방과는 건설업·조선업 재해예방 기본계획 및 대책 수립·시행, 건설업 안전보건관리제도 운영, 건설근로자 기초안전교육제도 운영,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관리,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 운영, 타워크레인 및 가설기자재 안전인증·검사 제도 운영, 석면관리 및 석면질환 예방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하게 된다.

또 서비스산재예방팀은 서비스업 재해예방 기본계획 및 대책 수립·시행, 사업장에 대한 재정·기술 지원, 산업안전보건 교육·홍보, 안전의식 및 안전문화진흥에 관한 사항, 근로자 건강증진 체계 구축·운영, 건강진단 및 건강관리수첩 발급 제도 운영, 노사 자율·협력적 산업안전보건활동의 촉진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 관련 국제협력 등을 분장하게 된다.

한편 이번 시행규칙에 따르면 지방청의 ‘산업안전과’의 명칭이 ‘산재예방지도과’로 바뀐다. 아울러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 수원지청은 경기지청으로, 춘천지청은 강원지청으로 각각 명칭이 변경된다. 이 모든 사항은 공포 후 바로 시행된다.

암 산재 인정범위 내년부터 확대될 듯

이르면 내년부터 직업성 암의 산업재해 인정범위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즉 법으로 인정받는 발암물질 대상이 확대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업무 종사 중 암에 걸린 근로자의 경우 직업병을 인정받기가 한층 쉬워질 전망이다.

2월 13일 고용노동부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산재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직업성 암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산재보상보험법 등 관계 법령을 개정하는 작업을 추진 중에 있다. 이 작업은 최근 완료된 ‘직업성 암 등 업무상 질병에 대한 인정기준 합리화 방안’ 연구용역 보고서를 토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에는 현행 산재보험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7개 법정 발암물질과 암의 관련성 인정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참고로 산재보험법 시행령에 규정된 직업성 암은 염화비닐에 의한 폐암, 타르에 의한 폐암, 크롬에 의한 폐암, 벤젠에 의한 조혈기계암, 석면에 의한 악성중피종과 폐암, 방사선 피폭에 의한 혈액암, 타르 등 석유화학물질에 의한 상피암 등이다.

또 보고서는 산재보험법 시행령에는 없으나 제정이 필요한 발암물질로 1,3-부타디엔, 산화에틸렌, 목(재)분진, 니켈, 폼알데하이드, 다환식 방향족 탄화수소, 비소, 카드뮴 등 8종을 제시했다.

고용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인정 기준을 두고 각계의 의견이 엇갈려 현재 다양

한 의견을 수렴 중에 있으며, 아직까지 법정 발암물질을 어느 정도 늘릴 것인지에 대한 확정 방안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산재보험법 등에 명시된 7종의 법정 발암물질은 1963년 법 제정 이후 한 번도 개정된 적이 없다. 이로 인해 변화된 산업현장의 작업환경이 적절히 반영되지 못해 승인율도 낮은 편이다. 실제로 지난 2000년부터 2009년 사이 직업성 암으로 산재보상을 신청한 근로자는 모두 1,933명인데 반해 승인된 사람은 13.1%인 253명에 불과했다. 때문에 노조단체 등에서 직업성 암 인정기준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양대노총 2011년도 안전보건사업계획 발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올 한해 산업안전보건사업계획을 최근 발표했다. 전체적인 면을 살펴보면 산재보험개혁, 안전보건관련 대국민 홍보 강화 등 주요 의제에 대해서는 양대노총이 뜻을 같이하고 있다.

먼저 한국노총이 올해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은 중·소규모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노총은 경총, 고용노동부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중·소규모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노사참여 안전보건 개선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한국노총은 중·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험성평가도 진행해 이들 사업장이 자율적이고 전문적인 안전관리능력을 갖추도록 할 계획이다. 올해의 경우 40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 한국노총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제도 실질화, 산재보험의 적용확대 및 업무상질병인정기준의 확대, 석면 건강보호 정책 및 제도개선, 고령노동의 증가 등 노동시장의 환경 변화에 따른 대책 마련 등에도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교육분야와 관련해서는 우선 소속 조합원들의 안전보건역량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노총은 소속 단위 노동조합과 각급 회원조합 및 지역본부, 조합원들을 상대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먼저 올해 조직 내 안전보건분야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노동안전보건실을 하반기중으로 신설하고, 산업관련 점검·기획회의 등을 전보다 자주 개최해 사업과정을 면밀히 챙길 예정이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산재보험개혁과 제도개선을 위한 활동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이를 위해 관련 토론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여기서 도출된 문제점을 정부에 건의해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들이 정당한 보상·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제도개선 차원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의무 적용범위를 기존 100인에서 50인으로 확대하는 안과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의무가입제도 도입 등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

재해가 증가하고 있는 공사금액 20억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 실시된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한 관계자는 "공사금액 20억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의 경우 현장 수가 많고, 공사기간이 3개월 내외로 짧아 이에 따른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미흡하다"라며 "이에 따라 20억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 순회를 늘리고, 즉시 방문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체제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공단은 전국 24개 지역별 건설재해예방 기관 소속 지도요원과 건설안전지킴이 등을 활용해 올해 말까지 소규모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밀착 지원에 나선다. 특히, 주택 등 건물 밀집지역, 건축물 및 구조물 해체공사 지역, 이면도로 등에 있는 재해취약 현장에 대해 기술 및 교육지원, 재해예방 자료보급, 캠페인 활동들을 적극 펼치기로 했다.

공단의 한 관계자는 "다양한 위험요인이 존재하는 건설현장은 재해발생시 사망 등으로 이어지기 쉬우며, 특히 재해예방에 대한 역력이 부족한 소규모 건설현장은 재해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라며 "이번 집중 지원이 전체 건설재해 감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장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참고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산업재해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공사금액 20억 미만의 건설현장 재해자는 2008년 14,111명에서 2009년 14,415명, 2010년 16,095명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추세를 볼 때도 전체 건설업 재해자 중 20억 이상의 건설현장 재해자는 감소한 반면, 20억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재해는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고용부, 환산재해를 '천재지변 등 사고 제외'

고용노동부가 그동안 꾸준히 논의돼왔던 환산재해율의 개선 방향을 공개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환산재해율의 산정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에 현행 방화, 폭행, 단순교통사고 외에 천재지변, 제3차 가해, 야유희 및 체육행사·취침·휴식 등 건설작업과 관련이 없는 사고가 추가된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PQ에서 재해를 반영(현행 +2점) 제도는 유지하는 가운데, 전년도에 비해 재해감소 실적이 우수한 업체는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